



보도자료

2015.11. 30.(월) 조간부터 보도 가능

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,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		
책임자	안창국 과장(2156-9890) 한윤규 실장(3145-6700) 김철배 전무(2003-9020)	담당자	송병관 사무관(2156-9891) 김봉한 팀장(3145-6710) 신동준 부장(2003-9200)
배포일	2015.11. 27.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4매

제 목 :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

1 추진배경

- 그동안 소규모펀드*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
 - *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(추가형)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

<소규모펀드의 문제점>

- (정상적인 운용곤란)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곤란
- (수익률 및 비용 문제) 펀드수익률 관리가 소홀하고,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
- (투자자 투자판단 저해) 투자전략이 유사한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저해하고 펀드상품에 대한 신뢰 하락

- 그간 금융당국과 업계는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, 기존 소규모펀드의 정리 부진 및 새로운 소규모펀드 증가로 소규모펀드 비율은 36% 수준에서 정체

* 소규모펀드 비율(%) : ('10) 48.2 ('11) 39.8 ('12) 36.9 ('13) 35.8 ('14) 36.2 ('15.6) 36.3

- ▶ 펀드 운용효율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규모펀드 일제정리를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소규모펀드의 증가를 제도적으로 억제할 필요

2 현황

- (소규모펀드 수) '15.6월 말 기준 소규모펀드 수는 815개로 전체 공모(추가형) 펀드(2,247개)의 36.3% 수준
- '11.6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 목표*를 수립하고 강도 높게 추진
 - * '14년말 전체 공모펀드(추가형) 대비 소규모펀드 비율 10% 목표
- 그간 노력에도 신규펀드 설정 지속으로 소규모펀드는 '13년 말(790개, 35.8%)을 저점으로 상승 반전

< 소규모펀드 현황 >

연도	'10년 말	'11년 말	'12년 말	'13년 말	'14년 말	'15.6말
대상펀드(개)	2,846	2,527	2,294	2,205	2,220	2,247
소규모펀드(개)	1,373	1,007	848	790	804	815
비율(%)	48.2	39.8	36.9	35.8	36.2	36.3

3 소규모펀드 해소방안

- (일제정리) '15.12월부터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일제정리*를 시작
 - * 판매직원 부담 완화 및 투자자 인식 제고를 위해 일제정리 캠페인('15.12월~'16.2월) 실시
- 각 운용사별로 수립한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*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독려
 - * '16.2월까지 406개, '16.5월까지 175개 정리 예정
 - * 임의해지 238개, 합병 19개, 모자형전환 108개, 판매확대 216개
- 정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소규모펀드 중 부실자산펀드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리계획 재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계획 미제출 및 미이행 시 신규 펀드 등록을 중단
- 판매사의 민원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펀드 정리와 관련된 민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민원 건수 산정시 제외
- (정리촉진) 정리가 미흡한 자산운용사*에 대해 직·간접적 패널티를 부여
 - * 정리단계별로 소규모펀드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개수 이상인 회사

- 모자형 펀드 또는 클래스(종류형) 펀드 외의 신규 펀드 등록을 목표 비율 또는 개수를 충족할 때까지 제한
- 운용사·판매사별 소규모펀드 현황^{*}을 매분기별로 금투협회를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배포
 - * 운용사·판매사별 소규모펀드 현황, 운용사별 소규모펀드 비중 등

[3] (신설억제) ① 기존 펀드와 유사한 펀드는 모자형 구조나 클래스(종류형) 펀드를 활용하여 기존펀드와 통합 운용토록 지도

② 소규모펀드가 될 가능성이 큰 펀드는 일정 시점에 대표펀드로 자동 전환된다는 내용 및 소규모펀드의 자동 정리방안 등을 신설펀드의 규약에 반영하여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펀드에 투자

- 펀드 설정후 6개월간 15억원^{*}을 초과하지 못하는 펀드는 동일 자산 운용사의 대표펀드 또는 MMF 등으로 자동 전환

* '10년 이후 설정된 소규모펀드 273개의 성장주기(life cycle) 분석결과 평균적으로 설정 5개월 후 최고 설정액(평균 11억원)에 도달하고, 그 이후 감소하는 양태를 보임

- 1년후 소규모펀드에 해당할 경우 규약에 따라 대표펀드 등으로 전환하거나 관련규정에 따라 정리(임의해지, 합병, 자펀드로 이전 등)

보도참고

4 향후계획

- 금융위·금융감원·협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펀드 정리 TF를 구성하여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

<기간별 소규모펀드 정리 목표>

구 분	'15.6월 말	'16.2월 말	'16.6월 말	'16년 말
기 초	815개	815개	409개	234개
정 리 목 표	-	406개	175개	약 130여개
잔존 소규모펀드	-	409개	234개	100여개 내외
비율	36.3%	19.8%	11.1%	5% 내외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

넓게 듣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펀드 해소 방안

2015. 11.

금융위원회
금융감독원
금융투자협회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소규모펀드 현황	2
III. 그간의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의 한계 ..	3
1.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 지원 측면	3
2. 신규 소규모펀드 억제 측면	5
IV. 소규모펀드 정리 및 양산 방지 방안	6
1.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 방안	6
2. 소규모펀드의 상시 정리시스템 구축	9
3. 신규 소규모펀드 억제방안	10
V. 향후 추진 계획	11

I. 추진 배경

- ① 그동안 소규모펀드*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관리 소홀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
*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(추가형)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

<소규모펀드의 문제점>

- ◆ (정상적인 운용곤란)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효율적인 분산투자가 곤란
- ◆ (수익률관리 소홀) 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
- ◆ (경영비효율 초래) 고정비용은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펀드 규모가 작을수록 펀드운용의 비효율성 발생 및 수익률 저하
- ◆ (투자자 투자판단 저해) 소규모펀드 난립시 투자자의 상품선택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 어렵고 펀드 신뢰도 하락 우려

- ②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 비교시 펀드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, 이에 따라 평균 펀드 평균규모도 영세한 측면

* 국제 평균대비 펀드 평균규모는 1/9 수준, 펀드 수는 약 2.1배

<국가간 공모펀드 평균 운용 규모 비교>

(단위 : 백만불, 개)

구 分	'11년 말		'12년 말		'13년 말		'14년 말	
	규모	개수	규모	개수	규모	개수	규모	개수
미 국	1,531	7,591	1,717	7,596	1,948	7,707	2,001	7,923
영 국	421	1,941	513	1,922	611	1,910	616	1,920
일 본	178	4,196	168	4,384	172	4,491	144	5,404
한 국	49	3,467	57	3,261	56	3,310	53	3,448
국제평균	309	1,676	311	1,731	386	1,732	434	1,533

* 미국자산운용협회(ICI)의 세계 45개국 공모펀드 대상 집계자료에 기초

** 공모펀드 순자산규모(세계 16위), 펀드 1개당 평균규모(세계 33위), 펀드 수(세계 7위)

- ③ 그간 지속적으로 펀드 수 감축과 펀드 운용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, 시장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흡

II. 소규모 펀드 현황

① (소규모펀드 수) '15.6월말 기준 소규모펀드 수는 815개로 전체 공모(추가형) 펀드(2,247개)의 36.3% 수준

- '11.6월부터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소규모펀드 정리 목표^{*}를 수립하고 강도 높게 추진
 - * '14년말 전체 공모펀드(추가형) 대비 소규모펀드 비율 10% 목표
- 그간 노력에도 정리가 부진한 가운데 신규펀드 설정 지속으로 소규모펀드는 '13년말(790개, 35.8%)을 저점으로 상승 반전

< 소규모펀드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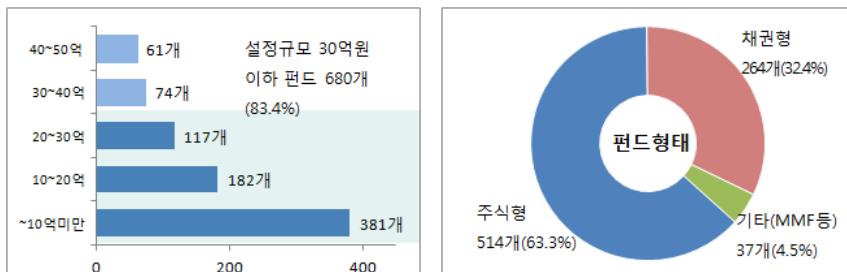
연도	'10년말	'11년말	'12년말	'13년말	'14년말	'15.6말
대상펀드*(개)	2,846	2,527	2,294	2,205	2,220	2,247
소규모펀드(개)	1,373	1,007	848	790	804	815
비율(%)	48.2	39.8	36.9	35.8	36.2	36.3

* 전체 공모펀드 중 소규모펀드로서 관리 필요성이 적은 단위형 펀드와 모자형 구조 중 자펀드를 제외

② (소규모펀드 규모) '15.6월말 현재 전체 소규모펀드 운용 규모는 1.2조원이며, 펀드별 평균 규모는 15.2억 원

- 이 중 설정규모 30억원 이하의 펀드가 680개로 소규모펀드의 83.4% 등 대부분을 차지
- 형태별로는 주식형 및 채권형펀드가 각각 63.3%, 32.4% 수준

<소규모펀드 규모 및 형태('15.6월말 기준)>



III. 그간의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에 대한 평가

- ◆ 그간의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은 신설 억제 보다는 기존 소규모 펀드의 정리에 중점을 두어 시행
- 펀드 신설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사후 정리 유도를 통해 업계의 펀드 남설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였으나, 간접적 방식으로는 펀드 신설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측면
- 그 결과, 일제정리를 추진한 '12년을 제외하고 '15.6월까지 소규모펀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

소규모펀드	'12년말	'13년말	'14년말	'15.6말
증가(+)	150개	216개	171개	91개
감소(-)	337개	173개	133개	62개
순증	△ 187개	+ 43개	+ 38개	+ 29개

1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 지원 측면

① 일제정리 이후 성과가 있었으나 구조적 원인에 따른 정리 어려움 등으로 소규모펀드 정리가 점차 정체되는 추세

* 정리실적 : ('12) 337개 → ('13) 173개 → ('14) 133개 → ('15.6.) 62개

- ① 세제혜택 펀드 등 구조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펀드가 잔존
 - (세제혜택펀드) 환매시 투자자는 그간 받아온 세제혜택을 반납 해야하는 세법 관련 제도상 임의해지가 어려운 측면(총 65개)
 - * 개인연금저축펀드('00년 이전), 장기주택마련펀드, 재형저축펀드,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은 펀드 단위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환매시 세제 혜택 반납
 - (부실자산펀드) 대우채 등 부실자산을 편입한 펀드는 자산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정리가 곤란(55개)

- (구법펀드 등) 구법(증투법 등)펀드와 투자회사형펀드는 구 법령 소규모펀드 관련 정리 제도가 미흡하여 해지 등이 곤란(26개)

* 구법펀드(18개) : 임의해지는 가능하나, 합병 및 모자형 전환 불가
투자회사형펀드(8개) : 임의해지가 불가능하며 모자형 전환 가능성은 불분명

② 소규모펀드 정리과정에서 고객 민원 발생에 따른 판매회사 · 판매직원의 부담 문제

- 손실이 발생한 소규모 펀드의 경우 판매회사 · 직원의 환매 권유 · 임의해지 통보시 민원 발생률이 높은 상황
- 민원 발생은 판매 직원에 대한 내부 성과 평가(KPI) 및 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판매사 · 판매직원은 소규모 펀드 정리에 소극적
- ③ 소규모 펀드 정리를 1회성 정책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의지도 부족
- 소규모 펀드 정리에 미온적이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소규모펀드 정리에 다소 무관심

② 제도적으로도 소규모펀드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는 데 한계

- 소규모펀드 정리에 유용한 합병 및 모자형 구조 전환의 특례^{*}를 소규모펀드간에만 인정
 - * ① (합병) 펀드합병에는 수익자 총회가 필수절차 이나, 소규모펀드간 합병시에는 수익자총회 생략 가능
 - ② (모자형 전환) 복수의 펀드를 통합하여 모자형 펀드 전환은 금지되나, 소규모펀드의 경우 복수 펀드를 통합한 모자형 펀드 전환 가능
- 실효성 있는 펀드간 합병 · 모자형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소규모 펀드와 非소규모펀드 간에도 특례 인정 필요
(→ 소규모 · 비소규모펀드 간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 개선 완료, '15.10.25)
 - * 소규모펀드 815개 중 30억원 미만이 83.4%로 2개 펀드를 통합하더라도 소규모펀드인 경우가 대다수

2 신규 소규모펀드 억제 측면

- 운용사는 펀드 신설을 선호하는 가운데 소규모펀드 설립을 사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
 - 출시한 펀드의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다른 펀드를 신규 출시하는 경향
 - 특별한 운용 전략 및 운용 인력 확보 없이 시장 상황 및 유행에 따라 타사 펀드를 복제하여 펀드를 출시하는 관행이 만연
 - * (사례) '15.3월부터 상해지수가 급등하자 중국펀드 신규설정이 30% 증가
- 특히, 대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백화점식 상품 라인업 구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규모가 작은 신규 펀드를 지속적으로 양산
 - * 펀드 수탁고 상위 10사 중 2개사를 제외한 8사는 100개 이상 공모(추가형) 펀드를 설립 · 운용(8사 평균 펀드 수 163개)
- '14년말 기준 운용사별 공모(추가형) 펀드의 수는 평균 42개, 운용 공모펀드 수가 50개 이상인 운용사는 12개(52개 중)

< 전체 신규설정펀드수 현황 (공모펀드기준, 단위:개) >

기준 연도	증권					MMF	파생형	부동산	특자	합계
	주식	혼합주식	혼합채권	채권	재간접					
2014	112	38	75	35	61	3	265	2	5	596
2013	68	18	74	38	92	1	236	1	7	535
2012	64	17	46	26	63	5	240	1	2	464

- 신규펀드 설정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, 투자자의 합리적 선별기능 부족 등으로 시장 원리에 따른 소규모펀드 관리에 한계
 - '13년 설정된 240개 공모(추가형) 펀드 중 65개가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 등 신설 펀드의 27%가 소규모 펀드화
 - 소규모펀드 중 56.4%(10년초 이후 신설 분)는 펀드규모가 非소규모 펀드 진입 기준인 50억원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

IV. 소규모펀드 정리 및 양산 방지 방안

< 기본 방향 >

- ◆ 운용사별 기존 소규모펀드 일제 정리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미흡사에 대해 신규펀드 등록 제한 등 불이익 부여
- ◆ 소규모 펀드 정리 지원을 위해 추가 제도 개선 및 판매사·판매직원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 마련
- ◆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와 함께 강력한 소규모 펀드 신설 억제 정책을 병행 추진하여 소규모 펀드 설립도 예방

1 기존 소규모 펀드 정리 방안

1 운용사별 정리 계획 수립 및 이행

① 정리 계획이 마련된 소규모 펀드(581개) 정리 방안

- ◆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을 제출 받은 결과 815개 중 581^{*}개를 자체 정리할 계획을 수립
- * '16.2월까지 406개, '16.5월까지 175개 정리 예정

① (임의해지 : 238개) 우선 고객들에게 유사 펀드로의 이동^{*}을 권유 (2주간 진행)한 후 1개월 후 임의 해지와 이동을 동시 진행

*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유사펀드 중 보수·수수료가 낮고 성과가 양호한 펀드로 권유하고, 환매수수료는 면제

② (펀드 합병 : 19개) 합병 20일 전까지 투자자들에 대한 통지를 마치고 반대수익권 청구 등 합병 절차를 거쳐 합병

* 非소규모펀드와의 합병 관련하여 금감원 확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

③ (모자형 전환 : 108개) 1개월 전 투자자들에 대한 통지 완료 후 변경 등록 및 증권신고서 정정 등을 통해 정리하고 통합 운용

④ (판매 확대 : 216개) 3개월간 투자자 모집 기간을 부여 후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정리 계획 재수립 요구

* 실현가능성이 높은 펀드는 41개 수준

- 정리계획 재수립시에는 임의해지, 합병, 모자형 전환 등 최대한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 선택을 유도하고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규펀드 등록을 금지(행정지도)

② 정리 계획 미제출 소규모 펀드(234개) 정리 방안

① 합리적 사유 없이 정리계획을 미수립한 소규모 펀드(88개) 운용사에 대해 정리계획 제출을 요청

- 정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규 펀드 등록을 금지(행정지도)

② 구조적으로 정리가 어려운 펀드^{*} 중 부실자산펀드를 제외한 여타 펀드는 '16.5월 중 정리 계획 재수립 요청

- (세제혜택펀드 : 65개) 동일 운용사내 모자형 전환을 최대한 유도하고, 유사펀드 부재시 타 운용사에 펀드 이관토록 지도

* 필요시, 소규모펀드는 타 운용사 펀드 이관시 수익자 총회를 면제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(S217)을 개정하는 방안 검토

- (구법펀드 및 투자회사 : 26개) 정리 가능한 수단(구법 펀드 : 임의 해지 / 투자회사 : 모자형 전환^{*})을 통해 정리 추진

* 투자회사를 투자신탁인 모펀드에 편입 허용(유권 해석 예정)

- (부실자산펀드 : 55개) 대부분의 펀드가 '18년 말에 자연 해소^{*}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 정리 대상에서 제외

* IMF 당시 부실채권 등에 대해 서울보증보험부 실체권을 인수하여 원금 징기 분할 상환 보증을 전제로 할인된 CP(대부분이 '18년이 만기)가 편입된 펀드

2 자체 정리계획 이행 독려를 위한 지도

□ 소규모펀드 정리 실적이 미흡한 운용사에 대해 신규 펀드 등록을 억제하는 행정지도 실시

① (대상) 소규모 펀드가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개수 이상인 회사

- 비율 또는 개수 산정시 부실자산펀드, 세제혜택펀드 등 구조적으로 정리 어려움이 있는 펀드는 제외
- 지도 대상은 업계 평균* 및 목표치**를 감안하여 결정하되, 행정지도 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반영

* '15.6월기준 소규모펀드 비율 36%, 개수 15개

** 정리 계획('16.2월 기준 406개)에 따른 목표치는 비율 19.8%, 개수 7.8개

② (지도 내용) 모자형 펀드 및 클래스(종류형) 펀드 외의 신규 펀드 등록을 목표 비율 또는 개수를 충족할 때까지 제한

③ (도입 시기 및 존속 기한) '16.1월부터 1년간 시행하되, 소규모 펀드 감소 추이를 보아가며 연장 여부 검토

3 소규모펀드의 원활한 정리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

①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제도 특례 확대

○ 소규모펀드와 非소규모펀드 간에도 합병·모자형전환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 개선(10.25일)에 맞추어 가이드라인 마련

(i) 소규모펀드와 非소규모펀드간의 통합시 합병의 비율 및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금감원 확인 절차 신속 진행

(ii) 업계가 원활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적정성 확인·점검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·공표

* (붙임1) 소규모펀드 합병 등에 관한 사전확인(가이드) 참조

② 모자형 펀드의 공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 부담 완화

○ (현행) 자펀드에 변경사항 발생시 같은 모펀드를 공유하는 모든 자펀드의 증권신고서를 변경하고 공시해야하는 의무 발생

* 예) 하나의 모펀드에 20개의 자펀드가 연결된 경우, 1개 자펀드 변경 사항 발생시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, 판매사 공시를 60회 실시(20건× 3=60건)

○ (개선) 자펀드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공시 범위를 모펀드로 한정하여 과도한 공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부담을 완화(비조치의견서)

③ 펀드 판매사·판매직원에 대한 민원 부담 완화

○ 판매 직원 성과지표(KPI) 산정시 소규모펀드 정리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제외하도록 판매사에 협조 요청

○ 소규모펀드 정리와 관련된 민원은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금융회사별 민원 건수 산정에서 제외

2 소규모펀드의 상시 정리 시스템 구축

□ 소규모펀드 일제 정리 기간 정례화

○ 매년 4/4분기를 소규모 펀드 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사전에 정리 계획을 마련하고 정리기간에 맞추어 정리·사후 공시

□ 소규모펀드 과다 보유 운용사 등에 대한 투자자 정보 전달 내실화

○ 운용사·판매사별 소규모펀드 현황*을 매분기별로 금투협회를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배포

* 운용사·판매사별 소규모펀드 현황, 운용사별 소규모펀드 비중 등

○ 운용사·판매사별 소규모 펀드 현황·정리 실적 및 회사별 비교를 통해 소규모펀드 정리 노력을 유도

3 신규 소규모 펀드 억제 방안

① 펀드 등록 심사를 강화(행정지도)하여 소규모펀드화 될 가능성이 높은 펀드 출시 억제

① 기존 펀드와 유사한 펀드는 모자형 구조나 클래스(종류형) 펀드를 활용하여 기존펀드와 통합 운용도록 지도

② 소규모펀드 정리 실적이 미흡하고 소규모펀드화 되는 비율이 높은 운용사의 경우 신규 펀드 등록시 보다 엄격하게 심사

③ 클래스 펀드 설립 사유를 확대^{*}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진행 되는 점을 감안하여, 필요시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

* (현행) 판매보수 · 판매수수료가 다른 경우에 한정
(개선) 운용보수, 세제, 환헤지 여부 등 다양한 사유 인정

② 신규 펀드가 소규모 펀드화 되더라도 정리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펀드 설립 단계부터 정리 제도를 반영

○ (기본 방향) 소규모펀드가 될 가능성이 큰 펀드는 일정 시점에 운용사 대표펀드나 MMF로 자동 전환되도록 펀드 설계

○ (대상) 모자형 · 클래스펀드가 아닌 공모펀드(추가형)

○ (적용 프로세스) 설정일로부터 6개월내에 최소 운용규모(15억원) 모집여부를 기준으로 판단

- 모집금액이 최소 운용규모 미달 \Rightarrow 신탁계약서에서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사의 대표 모펀드에 자펀드로 편입

○ (적용 방안) 펀드 약관에 자동 전환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

V. 향후 추진 계획

□ 금융위 · 금감원 · 협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펀드 정리 TF를 구성하여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

○ 소규모펀드는 '16.6월말 기준 234개(11.1%) 이하로 축소되고 정리 계획이 미수립된 펀드(234개)에 대한 정리가 일정 수준 진행된 '16년말에는 최대 5%(100여개)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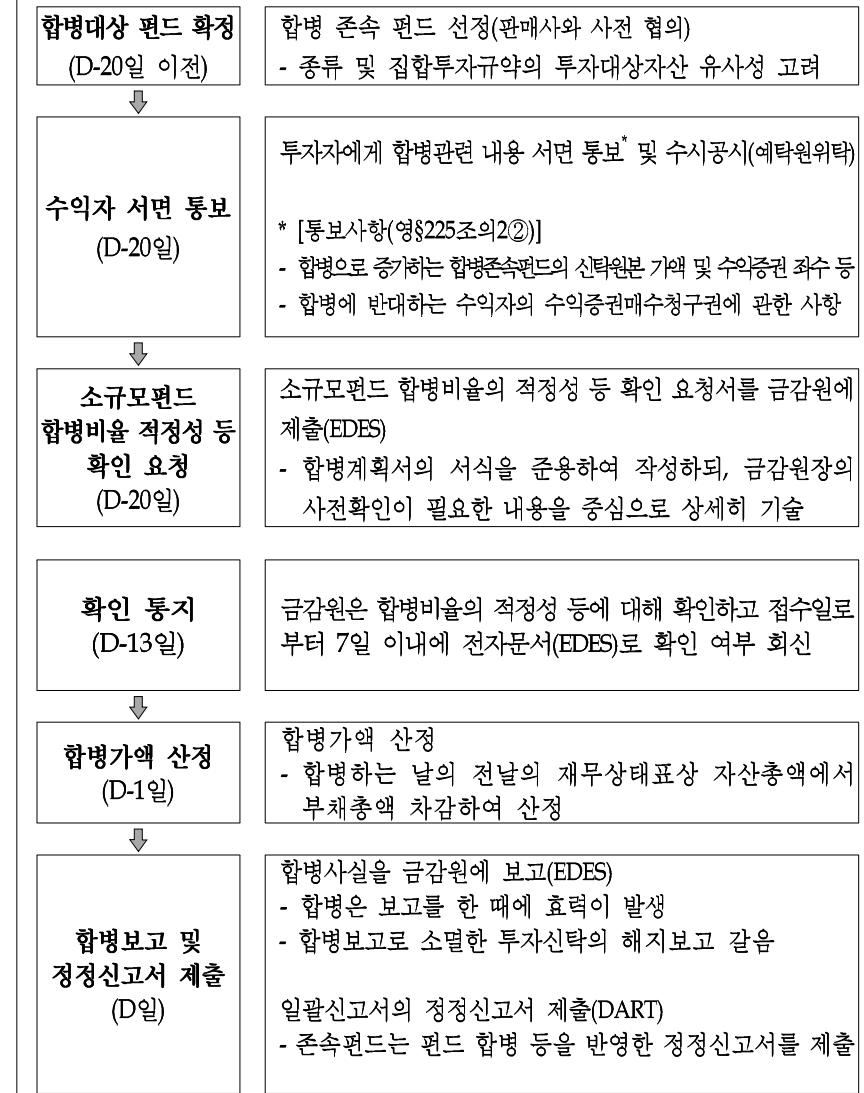
구분	'15.12월말	'16.2월말	'16.5월말	'16.6월말
① 정리계획을 제출한 소규모 펀드 정리				
펀드 갈아타기 후 임의해지	238개 정리			
펀드 합병	19개 정리			
모자형 구조 전환	108개 정리			
판매확대를 통한 해소	216개(상시 추진)			미정리 펀드 정리계획 제출
누적 정리건수	-	406개	581개	581+ α 개
잔존 소규모펀드 (소규모펀드비율)	815개 (36.3%)	409개 (19.8%)	234개 (11.1%)	234개 이하 (11.1%이하)
② 정리계획 미제출 소규모 펀드 정리				
펀드 설립 관련 패널티 부과	행정지도안 마련		행정지도 시행	
계획 미제출 펀드 정리		자율 정리		미정리 펀드 정리계획 제출
③ 소규모펀드 정리 지원 제도 개선				
합병 · 모자형전환 기준 마련	기준 마련 · 공표			
모자형 펀드 부담완화	개선방안 마련		규정 · 세칙 개정(3월)	
판매사 · 직원 부담완화	부담완화 방안 마련 · 시행			
④ 소규모펀드 신설 억제				
모자형 · 클래스 펀드 출시 권고	행정지도안 마련		행정지도 시행	
대표펀드 자동 전환제도	즉시 시행			

불임 1**소규모펀드 합병 등에 관한 사전 확인(가이드)****1. 합병**

- (합병비율의 적정성) 합병하는 날 전날의 기준가격을 적용
- (합병 사전 통지)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수익자에게 합병관련 내용^{*}을 서면 통지 및 수시공시^{**}
 - * 합병에 관한 사항 및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
 - ** 1%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수시공시로 서면통지로 대체 가능
- (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적정성) 사전통지한 날로부터 합병 전일까지 환매요청 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권 행사^{*} 가능
 - *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인 환매가 투자자에게 유리
- (자산의 유사성)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투자대상자산을 기준으로 유사성 여부를 판단^{*}
 - * (예시) 집합투자규약에는 투자대상자산이 지분증권, 국채증권 등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주식형 펀드간에는 유사성이 인정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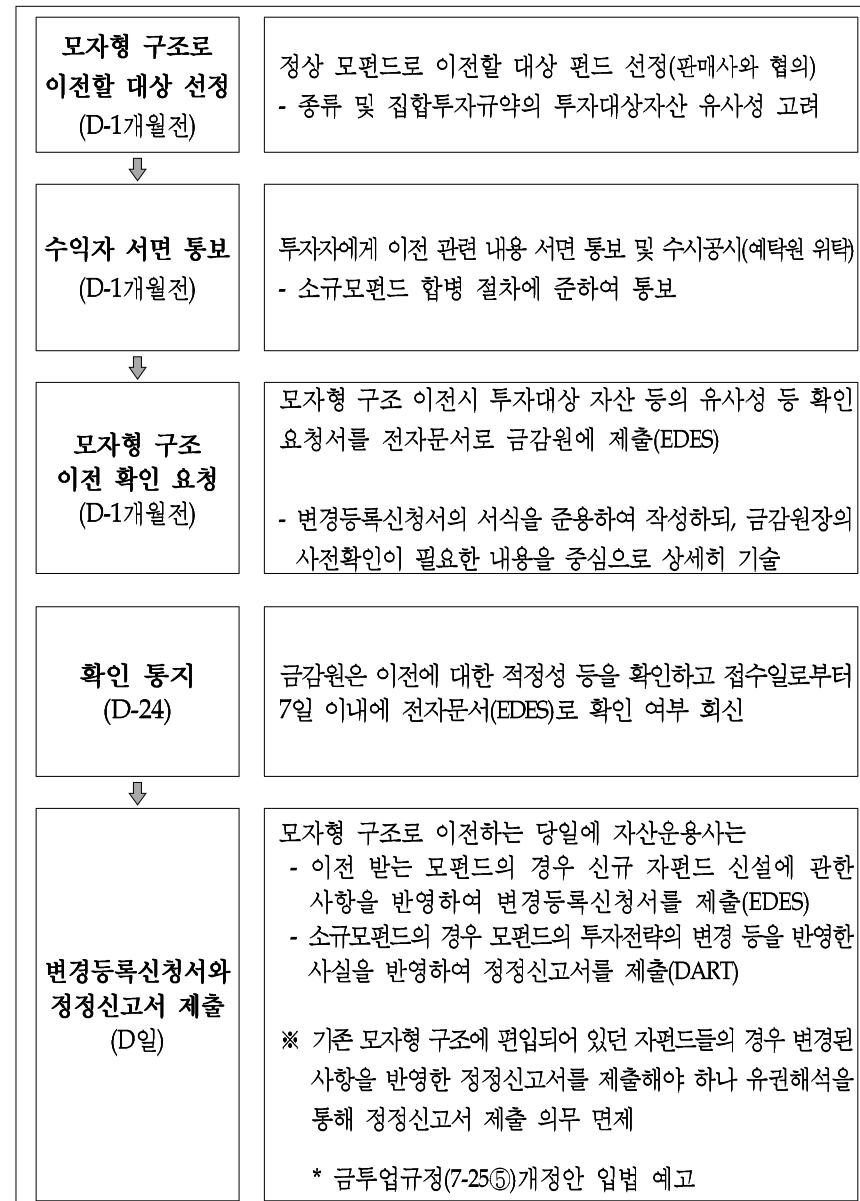
2. 모자형 구조 이전

- (사전 통지) 모자형 구조로 이전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수익자에게 이전관련 내용을 서면 통지 및 수시공시^{*}
 - * 1%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수시공시로 서면통지로 대체 가능
- (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적정성) 소규모펀드 합병 절차 준용
- (자산의 유사성) 소규모펀드 합병 기준 준용
- (보수 수수료 등 비용) 모자형 구조 이전 후 보수·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

불임 2**소규모펀드 정리에 따른 세부절차****1. 합병절차 흐름도**

※ 최소 필요일정을 의미하며,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간 협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

2. 기존 모자형 구조에 이전



※ 최소 필요일정을 의미하며,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간 협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